

2009년 3월 10일(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 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송홍석
사무관 : 양현수

- 2009. 3. 6 배포
- TEL : 2110-7046
- E-MAIL : sue7695@molab.go.kr
- 총2쪽(별첨자료 제외)
- FAX : 507-6494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계획 발표

-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

- 노동부는 '08년 규제개혁성과와 '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담은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 금년에는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에 중점을 두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하는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추진
- 미등록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현장중심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 미등록규제 전면검토 및 정비(~'09.12),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10.12)
- 아울러, 지난해 심층연구를 통해 근본적인 규제개혁방향을 도출한 산업안전보건분야*와 직업능력개발분야**는 공급자중심의 규제를 사업장,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 * 산업안전법 보호대상 확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위험성평가제도 및 벌칙제도 개선 등
 - ** 직업훈련시장의 시장실패영역 분석, 합리적 비용체계 마련 등
-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높이고 요건을 완화하여 유·무급휴가 등을 활용한 기업의 일자리나누기를 적극 지원하고,

- 자영업자도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 * 근로자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제 지원요건 완화, 임의가입 자영업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대상 확대
-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제출의무서류를 축소하고 유사한 사업의 보고서 제출 시기를 일원화
 - * 유사사업의 보고서제출시기 일원화, 각종 제출의무서류, 의무보존서류 축소, 안전보건관리규정 통합작성대상 확대 등
-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무형적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 수수료가 드는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다양한 민원관련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소리를 더 가까이, 더 정확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 국민신문고 민원분류접수체계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 추진
- 노동부는 금번 계획을 국민 중심·현장중심으로 추진하여 국민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상반기에 중점 추진·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달라진 행정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
- 더불어,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은 대화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
- 정철균 정책기획관은 “현장에서 생각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일몰제와 규제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일하는데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언급
- 노동부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정종수차관)를 구성하고,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건별심사제」를 도입함

[붙임]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2009년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2009. 3

노 동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목 차

I. 2008년 규제개혁 성과와 반성	1
II. 2009년 노동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2
1.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3
2. 규제품질의 개선	4
3. 규제개혁 인프라의 확충	6
[붙임 1] 2008년도 규제개혁 완료 과제별 주요성과	7
[붙임 2]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13

I 2008년 규제개혁의 성과와 반성

□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성과

- 전 정부적으로 규제개혁에 높은 국정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노동부도 적극적 개혁과제 발굴에 중점을 둠
 - 「노동규제개혁 TF」를 구성·운영하고, 국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 * 등록규제 221건 중 56건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08년 추진과제 27개 선정
 - * 고용·직업능력·고용평등·산업안전 등 4개 분야의 규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심층 연구하여 체계적 개혁과제 도출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조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등 국민생활 개선에 초점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법률 9건, 시행령 6건, 시행규칙 등 13건 개정
- 한편, 내부 법제심사 시 실질 규제심사를 병행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더욱 철저히 심사하여 시장의 질서 확립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노력('08.8 지침 시행)

□ 2008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반성

- 그 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가 잔존하여 일반국민이 직접 느끼는 만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 규제개혁에 대한 방어적·수동적인 성향으로 개혁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이 다소 미약하였음

II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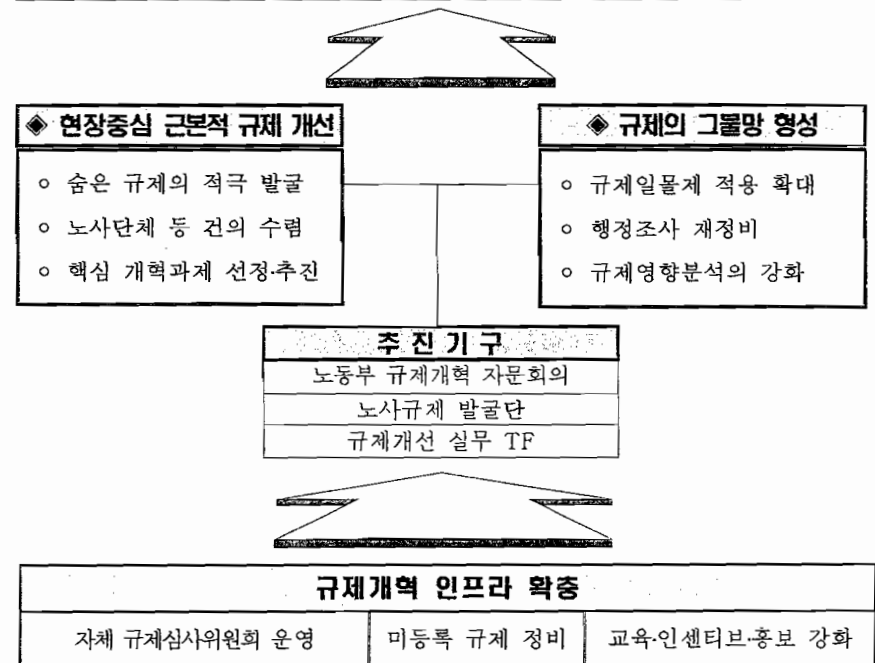
◆ 따뜻한 행정, 편리한 행정,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의 구현

-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노동권 보호를 동시에 추구
- 국민이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규제개혁
-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개혁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전략 체계도>

◀ 추진 방향 ▶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및 노동권 보장
- 취약계층중소기업 등 서민의 부담경감
- 사용자·근로자의 규제개혁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1.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 ◆ **노사단체, 국민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피규제자가 느끼는 체감도·만족도 제고**
- ◆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추진**

□ 숨은 규제의 적극적 발굴

- **(추진방향)** 행정규칙, 지침 등 하위법령상의 규제적 요소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규제를 집중 발굴
 - 민원 전자화 등 민원 접점에서 절차·제도를 간소화하고 관행을 개선하는 등 **생활공감형 개혁** 추진
 - 노사단체, 일반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하여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 규제발굴단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노동규제의 특성을 고려,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하는 규제발굴단을 활용하여 대상 규제 발굴

※ 현재 경제5단체 및 한국노총 등 6개 노사단체 실무자로 구성

△ 국민제안 창구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국민제안 창구를 활용, 상시적으로 개혁대상 규제 및 제도개선사항을 실시간 수렴
- 제안의 질과 국민의 참여도·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표창, 상금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홍보활동 추진

○ 추진 일정

- 숨은 규제 발굴 및 민원접점 생활공감형 개혁 추진 : 상시
- 규제발굴단 및 국민제안창구 운영 : 상시
- 규제발굴단 확대 : '09.2.28
- 국민 및 직원 제안 이벤트 : '09.5.1 ~ '09.6.30

□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합리화

- **(추진방향)** '08년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규제개혁방향을 도출한 고용정책 등 4개 분야*는 핵심개혁과제로 선정, 전면적인 제도개선 추진
 - * 산업안전, 직업능력, 노사정책, 근로기준
- **핵심 개혁과제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 기준체계를 합리화하여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업종별 또는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 * 추진일정 : 실증조사·연구('09) → 법률개정안 마련('09.12)
 - **(직업능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합리적 비용지원체계를 강구하여 직업능력정책의 시장기능 회복
 - * 추진일정 : 실증조사·연구('09) → 개선방안 강구('10)
 - **(노사관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
 - * '09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
 - **(근로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기간제법 및 파견법 보완
 - * '09년 관련 법률(기간제법·파견법) 개정

2. 규제품질의 개선

◆ 규제일몰제 적용 확대, 행정규칙 전면정비 등으로 실질적 규제체감도·만족도 향상

□ 규제일몰제 적용 확대

-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물론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도 전면 적용하여 모든 규제를 자동실효형·재검토형으로 분류·적용
 - * 자동실효형 : 일몰기한 도래시 해당규제를 자동 폐기
 - * 재검토형 : 일몰기한 도래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

- '09년에는 경제적규제(60건)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고, '10년까지 전체 등록규제에 대한 일몰제 적용
-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도 전면 확대·적용하고, 별도의 제도개선 까지 추진하여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임
 - * 노동분야 행정규칙 제도개선계획 국무회의 보고('09.5)

□ 미등록규제 일괄 정비

- 전경련 등 민간이 지적한 미등록 규제에 대해 재검토를 하여 등록조치 여부를 판단(국무총리실 협조)하고,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삭제
- 추진 일정
 - 규제개념 및 판단기준을 설정한 「규제개념 및 판단 지침」(국무총리실 협조)을 각 실국 시달: '09.4월
 - 미등록 규제정비 : '09.5월 ~ '09.6월
 - 미등록 규제 조치결과에 대해 규개위 보고 : '09.6.30

□ 행정조사 재정비

- 근로자의 권익침해 예방 및 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사를 폐지하거나 기준(주기, 횟수, 대상)을 완화 하는 등 행정조사를 전면 재정비(국무총리실 협조)
 - ※ 동일·유사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간 공동조사 실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신고하는 경우 행정조사를 면제·축소 등
- 추진일정
 - 행정조사 운영·정비계획 수립('09.1월)
 - '08년도 행정조사 정비효과 및 '09년도 기대효과 측정, 총리실 제출('09.3.31)

□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

- (현황 및 문제점) 주관적·추상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등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 미흡
- (추진방향) 네거티브 규제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규제를 신설·강화토록 함
 -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규제의 정밀성 강화하고, 입법 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도록 상시 점검

3. 규제개혁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 건별심사, 대면심사를 통해 규제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심사의견서에 규제영향분석서의 평가 요소별 심사의견, 주요 발언 내용 등을 적시

□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토대 구축

-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신설('09~) 및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 노동규제개혁 추진방향, 규제의 개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내외부 규제개혁전문가 초빙 강의 실시 예정
- 노동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추진(정책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정책 고객 대상 이메일 발송 등)

【붙임 1】

2008년도 규제개혁 완료 과제별 주요성과

분야	연번	과제명	완료일자	주요성과
고용 정책	1	국가자격시험 인우보증제 요건개선	'08.5.1 *한국산업인력 공단 검정관리 운영규정 개정 ('08.3.26)	○ 회사 부도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인우보증으로 경력 확인을 하던 것을 -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간소화 ※ '07년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304,336명 중 사실확인서 제출자는 2,414명
	2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편의 제고	'08.12.17 *시험령 개정완료 '08.11.26 *시험규칙 개정완료	○ 기술사와 기능장 자격취득자가 동일직무분야 다른 종목에 응시할 경우 학·경력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던 것을, -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가 학·경력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함 ※ '07년 기술사·기능장의 동일직무분야 타 종목 응시자 수는 527명 ○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년간 검정이 없을 경우 에만 다음 회차의 1회 필기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 실기시험이 1회 시행되는 경우까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필기시험 면제기회를 보장함 ※ '07년 검정회수가 1회였던 215개 종목 7,508명의 필기시험 면제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응시 기회 보장 효과가 있음
	3	국가기술자격 시험 검정수 수료 환불기회 확대	'08.12. 5 *검정관리운영 규정 개정완료	○ 상시검정 환불기간을 확대하고, 환불기준의 불합리점 개선(수시검정 환불규정 등 신설) - 상시검정 환불기간 확대(100% 환불 : 접수 당일→접수기간내, 50% 환불 : 시험 10일전 →시험 10일전→시험 5일전) - 수시검정 환불규정 신설(접수기간내 100%, 시험 5일전 50%) - 가족사망·본인질병시 환불규정 신설(시험 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시 50%)

분야	연번	과제명	완료일자	주요성과								
노사 정책	4	훈련연장급여 훈련지시대상 제도 개선	'08.6.30 *고시개정 완료	○ 40세 미만자에게 제한하였던 5개 직종(서비스, 사무관리, 금융·보험, 의료, 환경) 해지, FTA이직자 등 우선선정고려대상자 지정 ○ 기능 부족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 에게 구직급여 일액 수준의 훈련연장급여 지급 으로 생계 걱정 없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복귀 토록 유도								
	5	위탁훈련기관 시설요건 개선	'08.12.26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완료	○ 위탁훈련기관의 시설기준(면적) 요건 폐지 로 민간훈련시장의 진입장벽 제거 및 전문화(다양화)된 민간훈련시장의 수요반영								
	6	훈련과정 변경 절차 개선	'08.12.26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완료	○ 훈련과정 인정내용에 관한 변경보고 절차 완화 를 통해 행정거래 비용감소								
	7	고용보험법상 구 직 급 여 지 급 정 지 기간등 합리화	'08.6.30 *고시개정 완료	○ 노동부고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규와 고시 규정 간 상치문제를 해결하여 일관성 확보								
	8	직장여성 출산 휴가급여 지급 절차 개선	'08.11.11 *국회제출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에 해당 하는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위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9	노사협의회 개 최 주 기 및 벌칙규정 개선	'08.11.28 *국회제출 < 조기완료 >	○ 노사가 사업장 특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노사 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3개월→6개월에 1회 이상)할 수 있어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 ○ 또한, 회의 미개최시 행정명령 단계에서 시정 하고 있어 고소사건 외에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도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 과도한 제재 부과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정기회의·고충처리위원 위반 사법처리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08.1</td> <td>'08.2</td> <td>'08.3</td> </tr> <tr> <td>업장 결 등 신고</td> <td>8건</td> <td>7건</td> <td>22건</td> </tr> </table>	구분	'08.1	'08.2	'08.3	업장 결 등 신고	8건	7건	22건
	구분	'08.1	'08.2	'08.3								
	업장 결 등 신고	8건	7건	22건								

분야	연번	과제명	완료일자	주요성과
	10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를 게시·비치의무로 개선	'08.11.28 *국회제출 <조기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규정의 제정·변경시마다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게시·비치의무로 개선함으로써 -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제고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07년말 40,133개소) 등의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 기준	11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 조정	'08.6.2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에서 '양조의 업무'를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취업기회 확대
	12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이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유무에 대한 조치기준 개선	'08.12.31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완료('12.31이전 완료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법 절차를 몰라 인가받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법처리하던 것을 완화 ○ 무조건 사법처리하게되면 임산부와 연소자 고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시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방지
	13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조건 완화	'08.8.29 *고시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불근로자에게 체불생계비의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적기에 생계비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장기 체불자도 안정적 생계유지 가능하도록 개선 ※ 대부대상 요건 완화 : 2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근로자 → 1개월분 이상 ※ 대부금액 상향조정 : 1인당 500만원 → 700만원
	14	퇴직연금 도입 및 설계의 유연성 제고	'08.11.28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 ⇒ 의견청취) - 퇴직연금제도 도입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마련 및 임금체계 유연화에 기여 ○ 퇴직연금제도 형태를 다양화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근로자별 DB형 및 DC형 등시선택 허용, 복수사용자 공동플랜도입) - 퇴직연금 형태를 다양화하여 사업자 여건에 부합하는 제도설계가 가능해졌고, 복수사용자 공동플랜을 통해 수수료 절감 등 효과를 가져옴

분야	연번	과제명	완료일자	주요성과
	15	연금계리제도 도입	'08.11.28 *국회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의 연금계리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재정건전성 검증 기준 등) - DB형의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사용자 부담을 연금계리에 기초하여 합리화 시킴
	16	퇴직보험 효력 기간 만료이후 잔여퇴직금 처리 기준 명확화	'08.12.19 *지침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보험 효력 만료이후에 잔여퇴직금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화하여 일선 사업장에 혼란방지
산업 안전	17	GHS를 반영한 MSDS 제도 등의 시행 시기 연기	'08.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도입 취지에 맞게 EU와 미국 등 대다수 국가들과 시행시기를 맞추고, 조기 시행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로 향후 시행에 만전을 기함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기재한 자료
	18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보완	'08.6.17 *고시개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출기준 보완 - 케로젠 등 강화 29종, 국물분진등 신설 13종 ○ 노출기준 개정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1,454백만원의 순편익 발생
	19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검정제도 개선	'08.7.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인증 및 자율 안전확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직접 편익이 약 180억원* 예상 -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함에 따라 사업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20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검사·검정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에 따른 규제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06년 안전공단)
	20	작업환경측정 주기 완화 기준 개정	'08.7.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기준 미초과 공정에 대한 주기완화(6개월에 1회 ⇒ 1년에 1회) - 소음과 기타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측정주기를 완화함으로써 주기완화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경감

분야	연번	과제명	완료일자	주요성과
	21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위탁기관 확대	'08.11.24 *고시개정 완료	○ 사업주의 교육기관 선택의 폭 확대 및 직무교육의 내실화 기대
	22	특별안전교육 방법의 개선	'08.11.24 *고시개정 완료	○ 특별교육 강사요건에 대상작업에 3년 이상 근무자 추가로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 및 교육의 내실화 기대
	23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방법 개선	'08.11.12 *국회제출	○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측정결과를 측정기관이 직접 노동부에 보고토록 하고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같음 - 연간 약 6만 건의 사업주 보고 부담을 경감 ('07년 상·하반기 측정대상 60,707개소)
	24	직무교육 등에 대한 교육기관 위탁을 등록제로 개선	'08.11.24 *고시개정 완료	○ 허가 위주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에 따른 행정재량권 축소 및 교육기관의 직무참여 확대 기대
	25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방안	'08.11.12 *국회제출 <조기완료>	○ 감독관청 또는 외부기관이 주도하던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사업장내부 노·사가 주도 하는 방향으로 전환 ○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이 법령에 규정된 위험요인에 한정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행
	26	산업안전 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08.12.19 *훈령개정완료	○ 사업장 감독대상 기준 중 직업병 유소견자 3인 이상의 기준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 한 기준으로 조정 - 직업병 유소견자 3인 → 근로자 100인 미만은 2명, 1,000인 미만은 3명 및 1,000인 이상은 4명으로 조정
기타	27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08.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완료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차차기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약 48만명)에 대한 보호 강화

분야	연번	과제명	완료일자	주요성과
	28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	'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완료	○ 기업규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증감폭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소규모 사업체의 급격한 요율변동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 함으로써 기업규모간 보험료 인상의 형평성 제고 *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 30명~150명 미만 : ±30% · 150명~1,000명 미만 : ±40% · 1,000명 이상 : ±50%
	29	고용보험 임의가입 해지 요건 개선	'08.11.21 *국회제출	○ 서로 상이한 고용보험 임의가입과 해지신청의 요건을 통일함으로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
	30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한 민원 관리 체계 개편	'08.5.27 *개선방안 장관 보고	○ 지방노동관서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대폭 확대 - '08.9.1부터 발급요청이 가장 많은 구직등록 필증, 산재율 확인서를 인터넷 발급 - '09년부터는 노동부 민원업무 189종 중 100종, '10년부터는 모든 민원에 대해 인터넷 신청 가능 ○ 사업주의 '안전보고관리책임자 선임 보고' 및 '작업환경 측정·특수검진 결과 보고'는 '09.7.1부터 폐지 - 연간 10만건의 민원건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됨 ○ 노동부 진정사건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채불 관련 제도 및 프로세스를 획기적 개선 - 근로감독행정의 방향을 '적발'위주에서 사업주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율개선'중심으로 전환, 간이진술제 활성화 등 ○ 민원처리 모니터링·개선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감축 및 서비스의 질 개선 * 처리기간 도과율 40% 감소, 민원량(산업안전·근로감독) 18.6% 감소, 전화상담품질(응답률) 5%p 상승
	31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등 행정질서별로의 전환	'08.11.28 *국회제출 <조기완료>	○ 실효성 없는 형벌규정, 과잉형벌규정을 폐지·완화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여 노동행정벌에 대한 순응도 향상과 처벌부담의 최소화

【붙임 2】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시기
1	○ 직업능력정책의 시장기능 회복	○ 직업능력개발의 합리적 비용지원 체계를 강구하여 효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체계 마련	○ 연구용역 등 진행후 관련법 등 개정	○ 직업훈련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정부 개입 개선	'10.12.31
2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실질적 단결권을 보장하면서 노·노사갈등을 최소화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	'09.12.31
3	○ 산업안전보건 기준체계 합리화	○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업종별 또는 유해·위험요인별 특성에 맞게 시행규칙 세분화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	○ 업종별 및 유해요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작성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10.12.31
4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고용여건 개선	○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법 보완 (사용기간조정, 파견업무범위조정,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처우개선	'09.6.30
5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실업급여) 임의 가입허용	○ 고용보험법 개정	○ 자영업자의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통해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09.9.30
6	○ 근로자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제 지원요건 완화	○ 훈련일수 및 훈련시간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 훈련일수·시간의 일치에 따른 합반운영 등 훈련 활성화 기대	'09.4.30
7	○ 자영업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 임의 가입한 자영업자 학자금대부 신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도모	'09.4.30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시기
8	○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 불합리한 제재기준 (직능법시행규칙 별표3,4) 정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개정	○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09.4.30
9	○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영세자영업자 훈련이 저조하여 훈련참여 요건 완화	○ 고시 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영세자영업자훈련 참여 요건을 완화하여 직업훈련의 기회 확대 및 실업여부를 통해 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09.3.31
10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 축소	○ 국가만이 검정을 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축소하여 민간의 자격 참여 활성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국가외 검정금지종목 축소 ○ 민간의 자격제도 참여 활성화 기대	'10.12.31
11	○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시기 개선	○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제출시기에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3월말로 5월말-8월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고용평등분야 고용현황 보고 제출시기 일원화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편의성 제고	'09.10.31
12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현황 조사시기 개선	○ 고령자 고용현황 등의 제출시기를 여성·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사상황 보고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3월말로 1월말→3월말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고용평등분야 고용현황 보고 제출시기 일원화로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편의성 제고	'09.12.31
13	○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존서류 범위 축소	○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에 관한 서류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사업주의 서류보존 부담 감소	'09.12.31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시기
14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의무 개선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 축소 및 서식 조정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10%의 사업주만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관련 업무 90% 감소	'09.12.31
15	○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방법 개선	○ 산전후휴가급여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2회차부터)	○ 산전후휴가급여 온라인 전산 시스템 구축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자의 관청방문 횟수 감소로 산전후휴가자의 편의 증진	'09.9.30
16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및 정년연장계획서 제도개선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및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을 고령자 고용안정 조사로 일원화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고령자 고용관련 행정 조사 자료 제출을 일원화하여 간소화 함으로써 기업 부담 경감	'10.2.28
17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지원요건 완화	○ 정년연장형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임금피크제 도입 촉진으로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	'10.2.28
18	○ 가격자율화를 통한 민간고용 시장 활성화	○ 구인기업에 대한 수수료는 유료직업 소개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자율·합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제 완화	○ 국내유료직업 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 ○ 국외유료직업 소개요금 등 고시 개정	○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양화 되고 - 시장가격을 반영한 자율적 직업소개요금 결정을 보장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도모	'09.5.30
19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변경 신고 절차 간소화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변경사항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 행정비용 절감 등 행정절차 간소화	'09.5.30
20	○ 직업소개소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개선	○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의 준수사항을 개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	○ 구직자의 편의제공 도모	'09.5.30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시기
21	○ 구인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	○ 구인포털에서 사용하는 직종 코드를 반영 워크넷 시스템 개편	○ 워크넷 시스템 개편	○ 구인기업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칭 최소화	'09.10.31
22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	○ 지원수준 인상 -휴업·휴직수당 : 2/3(대기업 1/2)→ 3/4(대기업 2/3) ○ 지원요건 완화 - 훈련 : 최소훈련시간 20시간→12시간 - 인력재배치 : 근로자 60%이상 사업종 재배차→ 50%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기업의 고용유지 조치를 적극 유도하여 고용안정 강화	'09.3.31
23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합리적 제고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고시' 개정	○ 취업이 특히 곤란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생계지원 확대	'09.3.31
24	○ 공인노무사 직무 개시등록 등 업무 민간위탁	○ 공인노무사 직무 개시등록, 폐업신고,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지방노동관서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	○ 공인노무사법 개정	○ 공인노무사의 위상제고 및 업무의 효율성	'09.6.30
25	○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최종합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합격취소 근거 마련	○ 공인노무사법 개정	○ 민원발생 소지 사전예방	'09.6.30
26	○ 취업규칙 기재 사항 합리화	○ 법정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정비	○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관계 규율의 합리성 제고	'10.6.30
27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요건 완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 완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 근로자의 생활고 완화	'09.4.30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시기
28	○ 노동위원회 의 조사권	○ 관계인에 대한 출석·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 또는 서류 제출 및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벌금 부과 ○ 벌칙 규정은 과태료로 전환	○ 노동위원회법 개정	○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양벌규정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과도한 부담 완화	'09.6.30
29	○ 노사협의회운영 지도지침(예규) 폐지	○ 현행 노사협의회운영 지도지침(예규 제468호)은 1981.12월 제정되어 5차례 개정되었으나, -법령개정 및 매년 사달하는 업무추진지침 노사협의회 업무매뉴얼로 대체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합성도 떨어져 폐지 검토	○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지침(예규)폐지	○ 경제여건의 변화, 노사정책방향, 노사관계의 상황 등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09.6.30
30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 작성대상 확대	○ 안전보건관리규정 통합 작성대상에 교통분야를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규제 합리화로 사업주의 부담 경감	'09.8.31
31	○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의 합리적 조정	○ 공표 대상 사업장 수가 과다하고 사업장별 유해·위험정도 및 규모가 고려되지 않아 사업장의 반발과 공표 효과 절감 초래 ○ 공표 대상 사업장수를 축소하고 사망만인율과 규모를 고려토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규제 합리화로 기업환경 개선	'09.8.31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시기
32	○ 산업안전보건 교육 운영의 탄력적 적용	○ 교육시간의 일률적 규정으로 형식적 교육의 부작용 발생 ○ 업무특성별 및 위험도, 작업자 숙련도, 교육 방법 등 제요소를 고려한 교육시간의 합리적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의 합리화로 교육의 내실화 기여	'09.8.31
33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청방법(허가제→신고제) 변경	○ 허가시 업체 검증 및 현장 확인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으로 업체 불만 야기 ○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업체가 신고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기업환경 개선	'09.8.31
34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검진 결과 보고 이원화의 문제점 개선	○ 사업주가 결과를 위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방관서에 제출함으로 단순 전달에 그침 ○ 기관이 직접 지방관서에 보고토록 개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사업주의 방문 횟수 절감 및 행정비용 절감 등 기업환경 개선	'09.8.31
3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의무 폐지	○ 수시변경되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 보고로 행정적 부담 초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보고의무 폐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사업주의 보고의무 폐지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등 기업환경 개선	'09.8.31
36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대행요원 대행한계 폐지	○ 지정기관의 총지정액과 대행요원의 개별 대행한계를 동시에 규제하여 비효율화 발생 ○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대행요원의 대행한계 폐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대행요원의 대행한계 폐지로 인한 대행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로 재해 예방 효과 기대	'09.8.31

번호	과제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완료시기
37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건설기계 차차기에는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건설기계종사자를 중소기업주에 추가하여 산재보험 임의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취약계층인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한 보화 강화	'09.6.30
38	○진폐재해자의 보상체계 개편	○비요양 진폐재해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책 마련 요구 ○진폐·장해 판정시스템 등 진폐재해자 생활보호대책에 대한 개선안 마련	○진폐의 예방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비요양 진폐재해자에 대한 생활보장, 치료와 소득보상을 분리함으로써 요양 합리화에 기여	'09.9.30
39	○국민신문고 민원 분류·접수 체계 일원화	○본부·지방관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분류·접수기능을 인터넷 상담을 전담하는 종합상담센터로 일원화	○국민권인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 개선을 협조 요청	○국민신문고 민원 분류·접수과정의 비효율 개선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09.2.28
40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	○고객만족도 설문 항목, 표본수, 조사 주기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개선안 마련 및 조사설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신뢰도 및 실효성(피드백 기능) 제고	'09.3.31
41	○전자민원 신청시 민원수수료 면제	○근로자파견사업허가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7종)에 대해 전자민원 신청시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4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수수료 납부(수입인지 첨부)에 따른 민원인의 금전적·시간적 비용 및 행정업무 부담 절감	'09.12.31